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1
----------	------

제출일자 : 2023. 6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

2. 주요내용

-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별표 1)
 - 제2호 1인당 숙박비 상한액 상향 (서울 70,000원 →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70,000원)
-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1조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5. 9. ~ 5. 3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에”를 “별표 2에”로 하며, “군수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를 “공무원이”로 하고, “【별표1】 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규정 【별표1】 ”을 “규정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의 구분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u> ----- ----- -----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u>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u>[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u> ----- ② ----- ----- <u>별표 2에</u>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u> ----- -----.</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u> ② <u>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호를 적용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 -----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u> ----- ② ----- -----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u> -----.</p>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6. (생략)

7.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

8. (생략)

[별표 1] 제2호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5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5배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6. (현행과 같음)

7. 규정 별표 1 -----

-----.

8.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2호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	-------------------------------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 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의해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